

특집

우루과이 라운드와 原子力

UR協定과 原子力



이광석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UR이란 각국의 무역장벽으로 혼란스러워 있던 세계무역질서를 재정립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규범의 제정과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1986년 9월 우루과이 푸타델에스테에서 시작된 GATT 체제 내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UR은 1986년 협상 출범후 7년 3개월 만인 1993년 12월 15일 11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타결되었다. UR 협상의 타결로 원자력 제도 이제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 속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UR 협정에 대한 막연하거나 잘못된 두려움을 지양하고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UR 협정 중 원자력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UR 협정

UR 협상은 최고 의결기관인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그 산하의 상품협상그룹 및 서비스협상그룹,

보호조치의 동력 및 철폐 이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감시기구를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분야인 상품분야 협상은 시장개방을 논의하는 시장접근 분야와 무역규범 제정을 논의하는 규범제정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공산품 관세 인하, 비관세조치의 완화, 농산물, 열대상품, 천연자원상품의 5개 분야로, 규범제정 분야는 섬유,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safeguards), 기술장벽, 투자조치,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관세평가, 동식물 위생규정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 타결되었다.

협상의 두번째 큰 분야인 서비스 협상 분야에서는 개방 업종 및 개방조건에 대한 협상 등이 진행되어 타결되었고, 3번째 분야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와 적용 범위 및 기준 강화가 논의되어 타결되었으며, 4번째 협상 분야인 제도 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설치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신속히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타결되었다. UR 협상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협정문의 목차는 표 1과 같다.

UR 협정문은 타결되었으나 이는 헌법과 같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부조항 및 실무절차는 계속 만들어 나가는 상태에 있다.

UR 협정은 추후 결정될 것이지만 1995년 7월 1일로 예상되고 있다.

UR 협상의 타결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인하로 인한 무역 창출 효과와 함께 향후 안정된 국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GATT 체제는 느슨한 국제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WTO가 설립되면 경제대국간의 무역마찰을 중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세계 교역질서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화 추세를 UR 협상의 타결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화 추세의 배경에는 UR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데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활力求가 될 것이다. OECD나 국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두 UR 타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플러스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해 오던 GATT 체제가 이번 UR 협정을 계기로 그 구심점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GATT 체제가 50여년 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그 동안 국제무역질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냉전체제 하에서 절

대적 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은 비교적 개도국에 너그러운 입장장을 취해 왔으나, 독일과 일본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실리 위주로 노선을 바꾸었다.

따라서 UR 협정이 타결되었다 할지라도 UR이 추구하는 완전한 개방화와 모든 국가의 참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ATT 체제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추가 가입 대상국들과의 협상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막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이들로서는 자유무역체제를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타결된 UR 협정 중 원자력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인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서비스 교역,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UR 협정 중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즉 보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각국의 고유 권한이

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타국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에서 국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GATT에서는 무역 왜곡을 야기하는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타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는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상계관세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GATT내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에서는 GATT의 상계관세 규정에 대한 시행령적인 성격을 갖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이 체결되어 198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및 협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국, 호주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상계관세제도를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및 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여에 대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계관세의 발동절차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이 UR 협상의 한 분야로 자리잡아 타결되게 되었다.

UR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서는 보조금을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정지원으

표1. UR 최종협정문의 목차

제 1 부 최종협정문	4. 위생 및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
제 2 부 WTO 설립협정	5.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A UR 상품교역협정	6.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7.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a)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 1항	8. 반덤핑협정
(b) 해석에 관한 양해	9.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b)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 해 석에 관한 양해	10.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c)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조 항에 관한 양해	11.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d)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해 석에 관한 양해	12.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5조 해 석에 관한 양해	1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f)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 해 석에 관한 양해	14.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g)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5조 해 석에 관한 양해	부속서 1B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2. GATT 1994 UR 의정서	부속서 1C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3. 농업협정문	부속서 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무역정책 검토제도
	부속서 4 복수국간 무역협정
	(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b)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c) 국제낙농 협정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① 무상지원,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금이전과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대출 보증과 같은 채무부담, ② 조세 혜택과 같은 정부 세입의 포기, ③ 정부에 의한 일반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구매, 그리고 ④ 정부가 자금공여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①~③의 역할을 대행시키는 경우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에 직접적인 왜곡 효과를 갖는 보조금으로 UR 협정 발효후 3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각종 수출보조금과 국산품 사용을 촉진하거나 수입 억제를 위한 보조금이 금지되어야 한다. 이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무역 상대국의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 보복조치의 대상이 되게 된다.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은 직접적으로 수출입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무역 상대국의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실제적으로 피해 발

- (d) 우육 관련 협정
서명국
- 제 3 부 각료회의 결정 및 선언
1.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2. 세계경제정책상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기여에 관한 선언
 3. 통고절차에 관한 결정
 4. 관세평가
 - (a) 세관 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결정
 - (b) 최저과세 기준가격과 독점대리인, 독점분배권자 및 독점 양수인에 의한 수입에 관한 협정문
 5. 기술장벽
 6.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도국 우대 결정
 7.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
 - (a)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결정
 - (b)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결정
 - (c)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상 제14조(b)항에 관한 결정
 - (d) 기본 통신협상에 관한 결정
 - (e) 금융서비스 자유화 약속에 관한 양해사항
 - (f) 금융서비스에 대한 결정
 - (g)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
 - (h)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결정
 8. 정부조달협정 제24조 2항의 이행에 관한 결정
 9.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및 검토에 결정
 10. GATT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개선에 관한 결정
 11. GATT 1994 제6조 이행에 관한 결정
 12.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혹은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1994에 관한 협정의 Part V에 따른 분쟁해결에 관한 선언

생 판정을 받는 경우 보복조치의 대상이 된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은 법률상 모든 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거나 선별성 또는 자의성이 없어 허용되는 보조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계조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었다. 각 회원국은 매년 허용되는 보조금의 목록을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회원국의 보조금제도를 검토 반기하였다. 허용보조금에는 연구개발 지원, 지역개발 지원, 환경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이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행해지는 연구활동에 대하여 산업연구의 경우 소요비용의 75%, 기초개발 활동의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란 신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제품, 공정, 서비스 개선에 사용될 목적인 새로운 지식 발견을 목표로 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말하며, 기초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이란 산업연구 결과를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 청사진, 디자인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으로서, 개념화

및 설계, 그리고 시험적 제작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업화는 제외된다. 연구개발 지원은 인력비용, 연구활동 전용의 도구, 설비, 토지 및 건물비용, 연구활동 전용의 상담이나 서비스, 연구활동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추가적 간접비용, 그리고 연구활동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운용비용 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허용되는 '지역개발 지원'은 지역개발을 위한 일반적 계획에 의하여 체약국 내의 낙후지역을 위한 지원으로서 비특정적이어야 하며 낙후성이 중립적,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환경보조금'은 법이나 규정상 요구되는 환경 조건에 기준 설비를 적용시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일회적이고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적응비용의 20% 이하이어야 하고 기업의 계획된 오염 및 공해 감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UR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이 원자력계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 연구개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냐는 데 있다. 연구개발 지원의 제한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이 이에 해당한다는 신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이란 정부가 일반 산업체에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서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용화를 전제로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무상으로 특정 기업에 이전된다면 이는 보조금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교역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문제가 GATT 차원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각료회의에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뛰어난 미국이 서비스 교역 문제를 다룰 것을 공식 제안하면서부터이다.

미국이 이 제안을 한 배경은 세계경제에서 서비스산업과 서비스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고, 상품교역과는 달리 다자간 규범이 없어 국제간 분쟁의 가능성이 많으며, 미국의 비교 우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전해감에 따라 서비스 교역 확대에 대한 미국 국내업체의 관심이 높아졌다는데 있다.

이 제안은 개도국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나, 이후 미국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UR 출범시 다자간 서비스협상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개도국들이 이를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GATT 체제 밖의 서비스 협상그룹에서 서비스 협상

이 진행된다는 절차상의 신축성이 주어지는 등 개도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농림수산업 및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UR 협상 과정에서는 서비스 정의 자체에 대한 큰 논의는 없었다. UR 서비스 협상의 결과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모든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 대상으로 하며 시장접근과 내국 민대우에 관해서 국가간 양허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인가기준, 등록요건,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요건, 국내규제 등 의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협상을 권장하며, 국내규제조치에 대한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등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총 8개 분야에서 78개의 업종에 대해서 개방하기로 양허하였다.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 서비스의 개방 문제이다. 이번 개방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서비스는 포함되었으나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서비스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겠으나 차후 협상 대상이 될 소지는 남겨 놓고 있다.

원자력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또 하나의 서비스 개방 분야

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이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은 각종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생산요소, 재화, 용역 등을 결합하는 등 과학기술과 산업부문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시스템 산업이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생산 현장화함은 물론 빌주자와의 긴밀한 접촉으로 기술수요 형태의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연계효과를 지니고 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엔지니어링 서비스라는 빌미로 외국의 연구개발이 국내에 진출할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시공과 설계를 포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위 EC(Engineering Construction)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개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전의 주계약자가 주로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전 민영화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장벽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란 물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규정과 표준규격, 그리고 이들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가 국제무역

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국가의 각종 표준(standards)제도 및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인증(certification) 및 검사(testing)제도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상 표준화란 어떤 상품의 형태·치수·소재·기능·안전성 등과 같은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를 규정함으로써 동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명세는 표준화에 관한 제도 및 운용의 차이에 따라 표준과 기술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표준'이란 '반복적이며 연속적인 적용을 위해 승인되었으며 그 준수가 의무적인 아닌 기술명세'로 정의되며, '기술규정'이란 '적용 가능한 행정조항을 포함하여 그 준수가 강제적인 기술명세'로 정의되어 있다. 양자간의 주요한 차이는 표준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가 임의적인데 비하여 기술규정의 경우는 강제적이라는데 있다.

표준 및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이들 기준에의 적합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표본 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판정, 인정과 승인 절차를 포함하는 '적합성 판정 절차'라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나름대로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을 설정하고 다양한 적합성 판

정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표준화제도는 이제까지는 최종 상품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ISO 9000과 같이 공정 및 생산방식 등에도 채택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상이한 표준화제도는 국가간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다. 예를 들어 상품을 수출할 때 외국의 표준규격에 맞도록 상품의 변형작업을 하거나 외국의 표준에 맞는 생산시설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비용이 발생한다. 양국간의 표준화 차이에 따라 이 조정비용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 양국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 이행여부가 자의적인 경우에는 무역장벽이 잠재적이지만 기술규정의 경우와 같이 강제적인 경우 실제적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표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제적인 조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조화 노력은 192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29개의 표준화 관련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이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이 국제표준을 외면하고 있는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동경라운드에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이 우리나라를 비

롯한 3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타결되어 1980년 1월 1일 발효하였으나, 표준화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적인 무역 제한도구로 오용 또는 남용되어 왔다.

이번 UR에서 타결된 기술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은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되었던 TBT 협정에 비해 근본적인 정신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대폭적으로 변화하였다. UR 기술장벽협정은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의 보장, 공산품과 농산물 등 모든 물품의 포함, 표준화제도의 무역장벽화 금지,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정의에 제품 뿐만 아니라 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 포함, 불필요한 강제규정의 폐지, 국제표준규격의 채택 강화, 표준규격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표준화제도의 무역장벽화 금지와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①국가 안보상의 요구, ②기만적 관행의 방지, ③인체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기술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기술장벽을 벌써부터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자력계는 원자력 관련 표준

이나 기술규정을 제정할 때 항상 이러한 협정을 잘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무역에 이용(또는 악용)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도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21세기에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분야이다. UR 지적재산권 협정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그 대상범위와 기준을 강화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말미암아 이제 원자력계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특집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해서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였다.

UR 협정이 주는 의미

UR 협정이 원자력계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차후 협정이 발효되고 세부적인 해석이 뒤따라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전쟁의 시대

게임의 룰을 정하기는 했으나,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게임 그 자체이다. 게임을 성공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우리의 약점을 숨기고 상

대방의 약점을 들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게임의 룰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정보 수집력이나 분석력이 훨씬 뛰어난 선진국보다 우리가 불리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특히 정부의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허전쟁의 시대

특허는 이제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되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개인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 과거 개인의 만족으로 끝쳤던 많은 과학기술자들도 이제는 개발한 기술이 곧 돈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특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항상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기 등록된 특허를 살펴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협상력의 제고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상력을 제고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UR 협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백명의 전문 변호사를 동원했던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의 권리은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한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